

국제환경규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金峻漢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I. 환경규제와 국제통상규정

1. 무역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수단

(1) 이론적 근거

-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비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2) 규제수단

-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

공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됨.

가. 수량제한

- 수량제한은 모두 GATT 20조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항)
 -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g*항)
 - 체약국단에 제출된 기준에 합치되는 정기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단에 직접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기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한 조치 (*h*항)
- 현재까지 16개국이 (*b*)항에, 9개국이 (*g*)항에, 그리고 10개국이 (*h*)항에 의거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규제대상품목은 농산물과 화학물질이 대부분임.

나. 기술규제

- 기술규제는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 The 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인간의 안전, 동식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이유로 하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이 체결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환경보호

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통보한 기술규정수는 모두 211건이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유해물질부문 87건(41.2%), 대기오염부문 71건(33.6%), 소음방출부문 20건(9.4%) 등으로 되어 있음.

다. 상계관세

-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임.
- 美國에서는 현재 환경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

(3) 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와 무역효과

- OECD의 조사(1988)에 의하면 환경규제수단은 153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능별로 크게 직접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과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 구분됨.

1) 직접규제수단

가. 특정상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 및 금지

-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제품 및 물질(주로 유해상품이나 살충제, 첨가제 성분의 물질, 희귀자원 또는 위기종)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완전금지하는 것으로 국내적으로만 시행하는 경우 의도하는 환경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환경규제의 보완책으

로서 수입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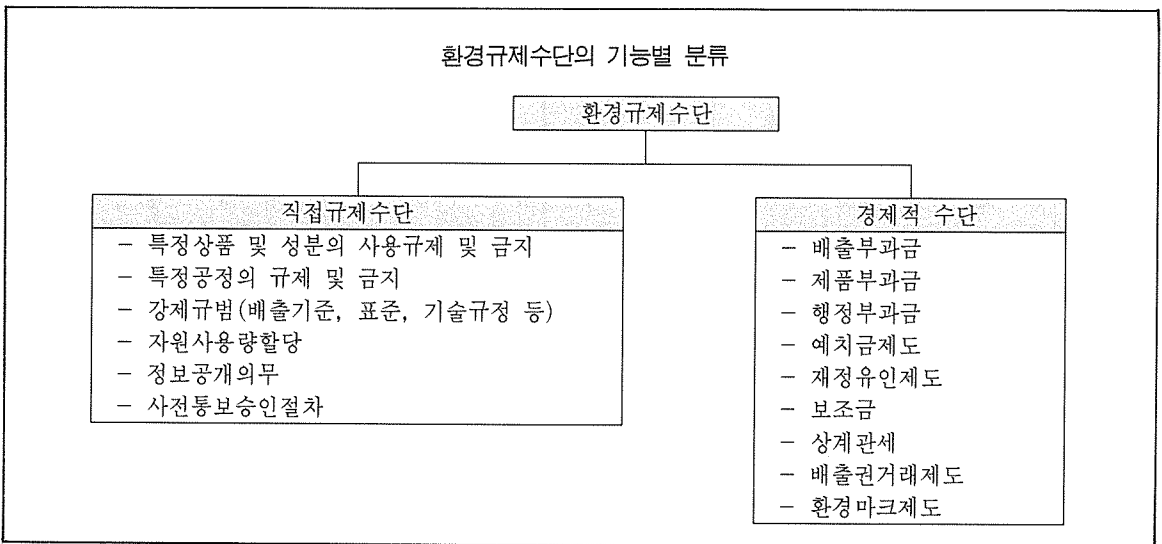
- 이 조치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 GATT의 무차별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피규제국이 동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의 사전무역양허(Prior Trade Concessions)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상품 및 성분에 대한 사용규제 및 금지는 새로운 제조방법과 신기술의 개발에 지장을 주어 규제국과 수출국 및 수출국간의 경쟁력변화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규제국의 관련생산설비가 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느슨한 외국으로 재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됨.

나. 특정공정의 규제 및 금지

-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 및 금지조치로서 시행국과 비시행국간의 경쟁력 격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규제국 관련업계의 요구에 의거 수출국 생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규제국의 위장된 산업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다. 강제규범

- 이는 제품, 공정, 배출 및 환경기준 등에 대해 정부당국이 설정하는 기술적 규정과 산업에 의해 설정되는 표준을 말하며 제품 및 공정에 설정된 제품의 시험이나 기준 감시 그리고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부과된 폐기물관리 의무와 관련된 절차규범도 포함됨.



- 이러한 강제규범은 수입품보다 자국상품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기준이 느슨한 인접국이 자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또는 외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규범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강제규범은 이의 시행국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기술표준을 설정하여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생산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장된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라. 자원사용량 할당

- 재생가능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가능천연자원이나 배출규모에 대한 쿼타(어로쿼타, 수자원의 산업 및 농업사용, 재활용 신문지사용의 권장)를 설정하는 제도임.

- 국내생산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국내생산자는 할당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외국생산자에 비해 경쟁력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당제 시행국은 자국생산자의 경쟁력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산지별 수량제한을 가하거나, 자국생산자들의 공급제한에 따른 가격상승분 만큼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마. 정보공개 의무

- 유해물질배출자료 제출의무, 환경영향평가 시행의무, 검사 및 인증절차관련 자료제출의무 등 준수비용을 수반되는 조치로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일부업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거나 또는 준수수체가 곤란한 경우 해당업체들의 해외이전도 초래될 수 있음.

바. 사전통보승인절차

- 유해상품, 폐기물,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수출입 또는 사용을 통제·금지하기 위해 어느 한 국가가 채택한 국내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화학제품규제에 관한 런던지침,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및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음.

2) 경제적 수단

가. 배출부과금

- 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특히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및 쓰레기 처분 등에 부과되며 부과액은 배출규모와 연계되어 결정되나 여타의 부과금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

은 편임.

- 배출부과금이 과중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수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정화능력에 따라 동일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상이한 수준의 부과금이 부과되므로 국가간의 경쟁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각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국가간 부과금수준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국별로 부과금 부과 단계가 다를 경우(예를 들면 생산자에 대한 배출부과금과 소비자에 대한 사용자부과금)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의 가능성도 있음.

나. 제품부과금

- 제품 폐기시 적정하게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일, 윤활유, 건전지, 음료용기, 비료 등 오염물질 함유상품 또는 오염유발상품의 생산에서 소비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제품수명주기 각 단계에 부과되고 있음.

- 제품부과금은 기본적으로 소비단계 또는 소매단계에서 부과될 경우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력 왜곡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외국 생산자의 입장에서서는 경우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시장점근이 곤란해질 수도 있음.

- 반면 생산단계에서 부과되는 제품부과금은 교역상대국의 시행여부에 따라 그리고 부과금액 수준에 따라 무역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의 가능성도 있음.

다. 행정부과금

- 이는 인·허가나 감시 등 정부당국의 사업재원도달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허가수수료와 등록/통제수수료로 구분됨.

- 행정부과금은 그 수준이 경미하고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대해 무차별 적용되는 한 무역효과는 매우 적으나, 부담금이 과중할 경우 살충제 등 소량판매 위주의 상품이나 신제품의 시장개척을 어렵게 하고 환경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라. 예치금제도

-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의 경우 그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제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부담시킴으로써(즉 내부화 시킴으로써)제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것임.

- 포장재, 용기(병) 등에 대한 예치금제도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밖에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대상품목도 폐건전지, 폐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이러한 예치금제도는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이고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는 하나 상품의 유통 및 마케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 從價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품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가격경쟁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다. 재정유인제도

- 이제도는 오염유발정도가 낮은 상품 및 공정의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규제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상 조치로서 공해상품에는 고세율을, 청정제품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통상 차별과세의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獨逸 등이며 주로 무공해차와 무연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재정유인제도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한 무역왜곡효과는 없으나, 예를 들어 소형차만 생산하는 국가가 대형차 수입에 대해 重課稅하는 경우와 같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해 상품에 대해 조세를 차별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

바. 보조금

- 보조금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촉진하고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생산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불균형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증여, 장기저리대부,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의 금융 및 재정지원 수단임.
- 보조금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이나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음. 즉, 환경기준이 비슷한 수준인 국가들간에 있어서 일국이 타국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조금을 자국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경우 해당국 기업들은 외국기업보다 경쟁력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

- 과거에는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최근 들어 兩 정책간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ATT,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1) GATT

- GATT는 개별국가 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입장 및 관점의 다양성, UR 협상타결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GATT 내에서는 ① GATT이사회(GATT Council), ②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이하 환경무역작업반), ③ 국내금지제품과 기타유해물질의 수출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Exports of Domestically Prohibited Goods and Other Hazardous Substances, 이하 유해물질수출작업반), ④ GATT 사무국(GATT Secretariat) 등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가. GATT 이사회

- 가입국의 상주대표들로 구성된 GATT이사회에서는 1991년 5월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한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음.
 - GATT의 역할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환경정책 또는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지 않음.
 - 국제환경협약은 국제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
 - 무역규제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정책의 대안으로서 활용되어서는 아니됨.
 - 무역규제조치는 다자간 합의에 기초하는 한 GATT와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그러나 上記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GATT가 OECD의 오염자부담원칙과 같은 환경비용 내

부화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 GATT가 공정 및 생산방식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
- GATT 규정과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간의 대립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
- 현재의 GATT 원칙들이 무역과 환경문제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지의 여부

나. 환경무역작업반

- 제1차 UN 환경회의의 개최 직전인 1971년에 구성되어 그 후 20년 동안 한번도 회의소집이 없었던 GATT 환경무역작업반에서는 1991년 11월에 제1차 작업반 회의를 소집한 이후 환경과 무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음.
- 현재까지 이 작업반에서 검토된 사항은 ①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규정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GATT 원칙 및 규정과의 상충성 여부 ② 무역효과를 유발하는 국내환경규제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 환경보호를 위한 포장규제 및 환경마크제도의 무역효과 등 세가지임.

다. 유해물질수출작업반

- 유해물질수출작업반은 제3세계로의 유해물질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우려한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1989년 7월 GATT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었음.
- 이 작업반은 1991년에 「국내에서 규제 또는 금지된 상품에 관한 결정 초안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제안서는 국내에서 규제 또는 금지된 모든 상품의 수출에 대한 통보절차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이 대상상품범위를 확대하고 이 제안서를 결정(decision)이 아닌 협정(code)화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수출작업반외 활동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라. GATT 사무국

- 위의 두 작업반의 작업추진과는 별도로 GATT 사무국은 1992년 2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참고자료로 GATT의 기본입장을 밝힌 「무역과 환경」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조장시키는 보호주의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고 무역을 증대시킴으로써 복리증진과 기술확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사회적 능력을 제고시켜 줄 수 있음.

- ② 잠재적인 무역마찰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적,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해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
- ③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될 수 없으나 국제환경협약의 발효 또는 협약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조치는 다자간 협력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회유 또는 위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④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정책의 강화 등의 보호주의적 대응은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효과를 감소시킴.
- ⑤ 환경문제에 대한 조급한 대응은 국제무역체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각국의 환경보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방된 국제무역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2) 세계자연기금(WWF)

- WWF는 GATT사무국이 기존 무역질서의 유지를 강조한 「무역과 환경」이란 보고서를 발간한 직후인 1992년 3월 이에 대한 반론을 자료로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交易財의 가격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한 무역확대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GATT 규범은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② GATT는 환경보호보다 무역자유화를 우위에 두고 있어 GATT체제하의 국제무역규범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부적절하며 최소한 GATT 규범에 버금가는 국제환경규범이 형성될 때까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규제가 불가피함.
- ③ 국가간 환경기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는 공해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생산방식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조치와 사법적 관할권 밖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함.
- ④ GATT는 국제환경협약이 GATT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제기관으로서의 국제환경협약의 토대가 되고 있는 UN의 위치가 GATT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⑤ 무역과 환경의 조화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및 무역과 환경문제를 균등하게 고려할 수 있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GATT 이외의 다른 기관이어야 함.

(3) OECD

- OECD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구는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다음의 4대 원칙을 제시하였음.

- ①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함.
- ② 조화원칙(Harmonization Principle) : 각국정부는 정당할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 ③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 각국은 환경조치시행시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준수함.
- ④ 보상적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부과금이나 수출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한편 OECD는 1991년 1월 OECD 각료이사회에 요청으로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1993년 6월 이사회 보고를 목표로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증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현재 이 작업반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침은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는 ① 정책요강서설 ② 국내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③ 무역정책과 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④ 국제환경협정에 있어서 무역조치 활용을 위한 지침 ⑤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 사용에 관한 지침 ⑥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 및 환경목적달성을 위한 지침 등임.

(4) UN

- UN 내에서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6월 개

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의제 21(Agenda 21)」의 제2장에 반영되었음.

- 「의제 21」은 실천장령의 목표로서 각국 정부에 대하여 GATT, UNCTAD 및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할 것과 국가간 화해 및 분쟁조정 등에 있어서 각 국제기구의 역할을 명료하게 할 것 그리고 환경과 개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역할을 증진시킬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이의 실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GATT, UNCTAD 및 여타의 국제기구로 하여금 다음사항을 검토하도록 요구함.

- 환경관련 무역조치 시행시 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
- 환경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과 발전문제의 근본원인을 처리
- 환경기준 및 규정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규제의 활용을 금지
- 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 건강 및 안전기준 등 임의적인 환경관련규정 또는 기준의 활용을 금지
- 사법권역 밖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방적 조치의 발동을 지양하고 국제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
- GATT 조항과 환경분야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치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밀성을 제고
- 무역규제조치의 활용 및 환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환경과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소들을 고려

3. 향후 국제환경규제의 전개방향

-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들은 기존 무역질서에의 수용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만을 위해 채택되는 경향이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들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관련국가간의 무역마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조금씩 다루다 보면 전후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체제의 효율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관계 발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자간협상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이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이 형성될 때까지는 일방적인 무역규제가 확산될 전망이며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간에는 쌍무적인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음.

II. 국내산업 및 무역에 대한 영향

-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가에 의한 환경규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경제발전 단계와 산업구조 그리고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등의 차이로 인해 다를 것이며, 산업 및 업종별로도 크게 상이할 것임. 국제분업구조의 형태 및 기술수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산업이나 업종도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 및 발전단계를 고려하

여 볼 때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 및 수출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임.

1. 주요협약별 영향

(1) 몬트리올의정서

- CFC 등 특정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산업은 특정물질생산 및 대체물질관련산업(화학, 가스, 산업기계), 특정물질사용산업(전기, 정밀기계, 화학·의약품, 자동차), 특정물질 회수·재생장치 관련 산업(석유, 화학, 산업기계, 철강) 등으로 광범위할 것임.

- 규제물질의 사용제한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차질규모가 지난해의 경우 약 2조원으로 추정되며, 1995년에는 약 3조 6천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CFC는 우리나라 주요수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질로서 대체물질의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비싼 대체제를 수입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지구환경문제로 인해 영향받는 업종

	산성비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국제 하천 오염	폐기물의 국제이동	열대림감소 야생생식종감소	사막화 토양침식
전 력	○	○					
가 스	○	○					
석유석탄	○	○					
철 강	○	○	○				
시 멘 트	○	○					
유 리	○	○	○				
화 학	○	○	○	○	○	○	○
종이펄프		○				○	
자 동 차	○	○	○				
플 랑 트	○	○	○				
전 기		○	○				
섬 유			○	○			○
해운선박				○			
종합상사						○	○
건 설						○	○
기 타		비철금속	정밀기기		폐기물처리		

<자료> 日本債券信用銀行 조사부, 「調査時報」, No. 113, 1991.

국제환경규제가 국내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경쟁력>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부담의 증대
 - 몬트리올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CFC 등 규제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냉장고, 자동차, 반도체 등)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비용상승요인 작용
- 원료 및 원자재조달에 예외발생
 - 바젤협약 발효에 따라 제지, 석유화학 등 관련산업부문에 재활용 원자재의 적기 수급에 차질 우려
 - 생물다양성협약 등으로 인해 목재, 가구, 건설, 의학 업계의 원자재 조달에 영향

<무역>

-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련산업위축은 수출감소로 직결됨.
-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국제규범(환경상계관세제도 등)이 설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환경기준이 낮고, 기술개발투자 등 환경관련 투자규모도 작기 때문에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됨.
- 환경관련 규제조치들은 최근 들어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계에 대하여는 규제내용 및 정보의 파악과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무역 규제 조치들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기술의 개발과 연계되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선진국 시장에서의 접근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資料> 商工部,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 1992. 8.

(2) 기후변화협약

- 구체적인 규제목표 및 규제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당장에는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업종별로는 에너지전환업종(전력, 가스, 석유, 석탄), 에너지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에너지효율기준이 적용되는 에너지이용기기업종(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됨.
- 반면에 공해방지시설, 에너지·건설(태양발전, 열병합발전, 태양열주탕, 지역냉난방시설 등), 에너지 이용기기의 제품개발 등의 부문에서는 신규사업기회의 창출이 예상된다.
- 에너지이용기기에 대한 선진국들의 효율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3) 바젤협약

- 우리나라 재생용원자재로 수입하고 있는 폐기물은 50여종으로 연간수입액이 1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銅, 鉛, 아연, 카드뮴, 플라스틱, 탄탈륨, 안티모니, 베틸륨, 탈륨 등의 殘廢物과 스크랩, 재정제용 폐유, 목재 펄프제조시 생기는 폐액 등은 바젤협약의 규제대상품목임.

- 또한 향후 규제대상물질이 보다 구체화되고 추가될 경우 수입비중이 높은 고철, 폐지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제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임.

(4) 생물다양성협약과 삼림원칙

- 생물다양성협약과 삼림원칙도 향후 의정서 형태로 구체화될 경우 국내의 생물산업과 생명공학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목재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급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 환경관세부과시 수출감소효과

-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선진국들이 국가간 공해 방지관련비용의 차이를 관세화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계량화해 볼 수 있음.
 - 즉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관세부과시 우리나라의 대신 선진국 수출감소규모 및 감소율을 품목별로 추정해 보고

자 함.

- 이 분석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美國, 日本, EC 에 대한 수출감소효과만을 고려함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60%를 점함.)

(1) 용어의 정의

가. 공해집약도

- 생산원가중 공해감축 및 방지비용(이하 공해비용으로 약칭)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 상품의 공해집약도(Pollution Intensity)라고 하며 공해집약도가 1% 이상인 산업 및 상품을 공해산업(Dirty Industry) 혹은 공해상품(Dirty Goods)이라고 정의함.
- 1988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16위의 공해상품수출국으로 공해상품수출규모가 총수출의 11.8%인 66억 달러임.

- 우리나라는 여타국가에 비해 공해상품수출비중이 큰 것은 아니나 무역의존도가 높고 선진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음을 감안할 때 환경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임.

나. 환경관세

- 환경관세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통칭하나, 이 분석에서는 국가간 공해방지비용의 균등화를 기하기 위해 공해비용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차이만큼 부과하는 관세로 한정함.
- 이는 공해비용균등화세(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Equalization Tax : PACEE Tax)라고도 함.

세계 25大 공해상품수출국 (1988년 기준)

	공해상품 수출액(억달러)	품목별 구성비(%)					세계전체 공해상품 수출에 대한 비중(%)	자국 총수출에 대한 비중(%)
		철 강	비철금속	정 유	금속제품	종 이		
1. 독 일	456	25.8	13.8	3.1	20.4	10.2	11.9	15.8
2. 미 국	285	7.3	14.8	11.1	15.1	9.4	7.4	10.5
3. 캐 나 다	252	7.3	23.2	6.1	6.4	27.7	6.6	23.8
4. 프 랑 스	220	32.7	13.3	6.7	12.7	9.5	5.7	14.6
5. 벨 기 에	208	36.7	16.1	10.1	9.8	6.6	5.4	23.5
6. 네 델 란 드	203	13.8	14.9	31.2	9.6	8.9	5.3	20.2
7. 일 본	189	50.5	8.8	1.2	20.5	5.4	4.9	8.1
8. 영 국	173	23.4	17.1	14.4	13.8	7.7	4.5	14.1
9. 이 탈 리 아	160	25.0	8.3	10.5	25.1	7.2	4.2	13.8
10. 스 웨 덴	153	20.3	6.1	5.7	10.4	34.1	4.0	33.0
11. 핀 란 드	100	10.5	6.9	4.2	2.6	56.1	2.6	52.3
12. 소 련	83	8.0	26.2	52.7	0.5	1.9	2.2	29.0
13. 브 라 질	79	44.7	16.4	11.4	3.2	7.5	2.1	24.3
14. 오스트리아	69	27.6	12.5	0.8	16.8	22.4	1.8	24.6
15. 스 패 인	68	28.7	9.5	18.5	14.5	5.6	1.8	18.4
16. 한 국	66	48.0	5.8	6.5	24.4	3.9	1.7	11.8
17. 대 만	62	12.9	7.4	2.3	49.3	2.7	1.6	10.0
18. 노 르 웨 이	60	1.7	42.8	7.8	4.4	15.2	1.6	27.3
19. 호 주	57	7.4	48.3	5.6	4.4	1.4	1.5	19.8
20. 스 위 스	56	12.9	21.0	1.0	27.7	8.9	1.5	11.2
21. 중 국	52	17.9	17.3	14.4	21.8	2.6	1.4	9.6
22. 남아공화국	50	31.6	48.9	1.2	1.4	3.7	1.3	41.0
23. 싱가포르	48	3.2	3.7	73.7	6.4	1.8	1.3	19.2
24. 베네수엘라	43	5.5	17.1	72.6	0.9	0.5	1.1	49.7
25. 사우디아라비아	41	0.4	0.6	95.1	0.7	0.0	1.1	14.9

<資料> Patrick Low and Alexander Yeats, "Do Dirty Industry Migrat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159, April 1992.

(2) 추정 결과

가. 對美수출

- 美國이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美 총수출은 2% 감소(1991년 수출액기준 365백만달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이 6.8%(1991년 기준 1억 1백만달러), 화학제품이 6.3%(1천4백만달러), 비금속

광물제품이 4.6%(1천만달러)의 높은 감소율이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對美수출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감소율이 1%(6천2백만달러)로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1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품목별 수출감소액 순위는 철강·금속제품(1억1백만달러), 섬유류(7천8백만달러), 전기·전자제품(6천2백만달러)으로 추정되었음.

<표-5>

품목별 對美수출 감소효과 (1991년 기준)

(단위 : 천달러, %)

SKTC 분류번호 및 품목명	대미수출액	구성비	對美수출감소효과	
			감소액	감소율
0 일차산품	212, 134	1.1	N/A	
1 화학제품	216, 095	1.2	13, 528	6.3
2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855, 029	4.6	18, 212	2.1
3 비금속광물제품	214, 032	1.2	9, 781	4.6
4 섬유류	3, 533, 866	19.0	78, 452	2.2
49 섬유제품	3, 028, 133	16.3	71, 873	2.4
5 생활용품	2, 782, 266	15.0	37, 561	1.4
51 신발	1, 924, 776	10.4	26, 278	1.4
6 철강금속제품	1, 487, 418	8.0	100, 549	6.8
61 철강제품	698, 353	3.8	76, 401	10.9
69 콘테이너	530, 794	2.9	12, 937	2.4
7 전기·전자	6, 352, 925	34.2	61, 623	1.0
614 컴퓨터	1, 055, 611	5.7	1, 301	0.1
72 전자부품	2, 812, 045	15.2	35, 200	1.3
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2, 668, 313	14.4	41, 626	1.6
81 일반기계	773, 972	4.2	12, 427	1.6
814 자동차	1, 141, 614	6.2	14, 186	1.2
9 잡제품	237, 178	1.3	3, 202	1.4
총공산품수출액	18, 347, 122	98.9	364, 534	2.0
총수출액	18, 559, 256	100.0		

註 : 잡제품의 경우 생활용품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음.

나. 對日수출

- 환경관세부과로 인한 우리나라의 對日총수출감소율은 4.7%(1991년 수출기준 4억8천9백만달러)로 對美수출 감소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우리나라의 對日수출품목중 공해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높고 (공해집약도 0.5% 이상인 품목의 비중이 25.7%)일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임.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감소율이 15.6%(274백만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멘트(13%, 15백만달러),

유기화학제품(10.5%, 38백만달러)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日수출에서 주종을 차지하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환경관세부과에 따른 수출감소율이 각각 1.7% 및 1.3%로 추정되었음.

다. 對EC수출

- 환경관세부과에 따른 對EC 총수출감소율은 1.8%(1991년 수출기준 1억6천8백만달러)로 對美, 對日수출 감소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우리나라의 對EC 수출중 공해집약도가 0.5%를

품목별 對日수출 감소효과 (1991년 기준)

(단위 : 천달러, %)

SKTC 분류번호 및 품목명	對日수출액	對日수출감소효과		
		구성비	감소액	감소율
0 일차산품	2,009,023	16.3	N/A	
1 화학제품	497,393	4.0	43,024	8.7
11 유기화학품	360,262	2.9	37,718	10.5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37,964	4.4	10,221	1.9
3 비금속광물제품	783,511	6.3	53,044	6.8
331 시멘트	118,841	0.4	15,445	13.0
39 유리제품	631,008	5.1	37,202	5.9
4 섬유류	3,009,404	24.4	49,655	1.7
49 섬유제품	2,526,154	20.4	43,462	1.7
5 생활용품	812,943	6.6	9,674	1.2
51 신발	443,839	3.6	4,859	1.1
6 철강·금속제품	2,056,093	16.6	285,797	13.9
61 철강제품	1,757,826	14.2	274,256	15.6
7 전기·전자	2,002,520	16.2	25,432	1.3
72 전자부품	1,367,788	11.1	19,142	1.4
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553,306	4.5	10,513	1.9
9 잡제품	93,681	0.8	1,115	1.2
총공산품수출액	10,346,815	83.7	488,477	4.7
총수출액	12,355,839	100.0		

註 : <表-5>와 동일.

품목별 對EC수출 감소효과 (1991년 기준)

(단위 : 천달러, %)

SKTC 분류번호 및 품목명	對EC수출액	對EC수출감소효과		
		구성비	감소액	감소율
0 일차산품	212,474	2.2	N/A	
1 화학제품	293,170	3.0	18,734	6.4
2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10,918	4.2	10,314	2.5
3 비금속광물제품	32,779	0.3	1,082	3.3
4 섬유류	2,086,330	21.4	43,396	2.1
49 섬유제품	1,600,612	16.5	37,269	2.3
5 생활용품	1,258,001	12.9	17,486	1.4
51 신발	789,933	8.1	10,389	1.3
6 철강금속제품	546,428	5.6	26,447	4.8
7 전기·전자	3,375,661	34.7	27,343	0.8
714 컴퓨터	664,820	6.8	701	0.1
72 전자부품	1,060,650	10.9	11,808	1.1
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400,032	14.4	21,700	1.6
841 자동차	318,667	3.3	3,692	1.2
85 선박	516,915	5.3	9,375	1.8
9 잡제품	112,704	1.2	1,567	1.4
총공산품수출액	9,516,023	97.8	168,069	1.8
총수출액	9,728,497	100.0		

註 : <表-5>와 동일.

상회하는 품목의 비중이 8.3%로 낮으며, 특히 공해집약도가 높은 철강제품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품목별로는 금액기준으로 섬유류(4천3백만달러, 감소율 2.1%), 전기·전자제품(2천7백만달러, 0.8%), 철강·금속제품(2천6백만달러,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품목별 수출

- 환경관세 부과시 美國, 日本, EC 등 3개지역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2.7%(1991년 기준 10억2천1백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품목별 수출감소율은 시멘트가 13%, 철강·금속제품이 10.1%, 종이제품이 9%, 화학제품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을 기준으로 한 수출감소액은 철강·금속제품(4억1천3백만달러), 섬유·(1억7천2백만달러), 전기·전자제품(1억1천4백만달러) 등이 1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수출측면에서는 시멘트, 철강·금속, 섬유, 전기·전자, 종이, 화학 등의 업종이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지역별로 볼 때 공해집약도가 높은 품목의 비중이 큰 수출시장에서 수출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입가격 탄력성차이보다 공해상품의 수출비중의 차이가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은 산업구조의 전환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4. 환경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은 새로운 법규의 도입이나 기준의 강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각종 협약의 체결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의 환경산업의 영역과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환경시장규모는 1991년에는 8천억원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3조원, 그리고 2001년에 가서는 5조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1990년 현재 세계전체의 환경시장규모는 약 2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연평균 5.5%씩 증대되어 2000년에 가서는 약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환경비지니스는 대체로 공해대책형 비지니스, 환경보전형 비지니스, 환경정보형 비지니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등 환경선진국들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공해관련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해대책형 환경비지니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투자가 오염물질처리장치나 공해방지장치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오염발생원 자체를 개선하고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지구환경보전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환경보전형 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 공해대책산업 자체도 그 효율성이나 경제성면에서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음.

품목별 對선진국 수출감소효과

(단위 : 천달러, %)

품 목	美 國	日 本	E C	計
화학제품	13,528 (6.3)	43,024 (8.7)	18,734 (6.4)	75,286 (7.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8,212 (2.1)	10,221 (1.9)	10,314 (2.5)	38,747 (2.1)
시멘트	151 (13.3)	15,445 (13.0)	-	15,596 (13.0)
종이제품	3,390 (8.3)	1,976 (10.7)	345 (8.1)	5,711 (9.0)
섬유류	78,452 (2.2)	46,655 (1.7)	43,396 (2.1)	171,503 (2.0)
신발	26,278 (1.4)	4,859 (1.1)	10,389 (1.3)	41,526 (1.3)
철강·금속제품	100,549 (6.8)	285,797 (13.9)	26,447 (4.8)	412,793 (10.1)
전기·전자	61,623 (1.0)	25,432 (1.3)	27,343 (0.8)	114,398 (1.0)
자동차	14,186 (1.2)	79 (1.3)	3,692 (1.2)	17,957 (1.2)
기타	48,165 (1.8)	54,989 (3.2)	27,109 (1.6)	127,563 (2.1)
계	364,534 (2.0)	488,477 (4.7)	168,069 (1.8)	1,021,080 (2.7)

註 : ()안의 수치는 감소율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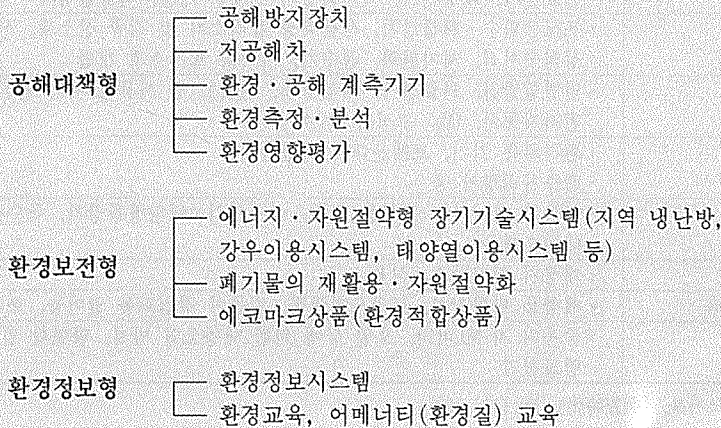
우리나라 환경시장규모의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1991	1996	2001
민간 부문	5,500	20,000	36,000
공공 부문	2,500	6,000	10,000
계	8,000	26,000	46,000

<資料> 商工部

환경산업의 분류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비지니스가 주로 공해대책형 비지니스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저급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업체가 많은 실정임.
- 그러나 공해대책형 산업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사업화가 가장 진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 성장에 예상되는 분야이고, 특히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잠재적인 수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III.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방안

(1) 환경외교의 강화

-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나 GATT 내 환경과 무역에 관한 협의 등의 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의 정립

- 가.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
 -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모조치는 환경오염의 근본원인을 치유하는데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자유화가 제한되어서는 아니됨.
 - 또한 환경비용의 내부화 등 건전한 환경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간의 통합·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국내·외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나. 국제환경문제와 무역규제
 -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환경

환경비즈니스 기회

	업 종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매우 기대 되는 업종	- 일반기계 - - 운송용기계 -	· 프레온 회수·재생장치 등 · 배연탈황장치, 배가스처리장치, 배수·쓰레기 처리장치, 환경 계측기기 ·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고효율발전기, 각종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기기
	전기기계	· 태양전지, 연료전지, 열펌프, 전기자동차, 프레온 대체 세정장치
	건 설	· 에너지절약 주택, 도시녹화, 특수성포장, 건설폐기물 재이용, 해양오염 정화, 사막의 녹화, 환경보전 컨설턴트
	화 학	· 대체프레온, 프레온회수·재생장치 · 생분해성 플라스틱, 석면대체재료 등 각종 신소재 탈질촉매 · 배수·폐기물처리·재자원화·해양정화 · 연료전지, 태양전지, 사막화방지 소재의 개발, 식물활성제
	섬 유	· 프레온회수·재생장치,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각종 신소재, 산업배수· 상하수처리, 재자원화, 정수기, 사막화 방지소재 개발
	전력가스	·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태양전지, 열펌프 등 이용의 지역 열공급 시스템, 전기자동차, CO ₂ , 고정화·재이용 등
확대가 기대 되는 업종	정밀기계 금속제품	· 환경계측 기기, 프레온대체 세정장치 · 배출처리장치 등
	요업·석재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배수처리·해양정화장치, 특수성 포장, 대체프레온
	종이·펄프	· 재생지 비즈니스, 식육
	철강·비철금속	· 제철용 탈황장치, 토양오염대책, 자동차 경량화용 알루미늄, 쓰레기 공장
	석유석탄	· 중유의 저 NO _x 버너, 오일 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資料> 日本債券信用銀行 조사부, 「調査時報」, NO.113, 1991.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적정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국제환경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무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무역제한은 최소화하고 협약목적과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
-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국의 환경정책을 변경시키려는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질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함.

다. 국내환경문제와 무역규제

- 각국은 자국의 환경상태에 적합한 환경정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국 및 국제기구가 이의 변경을 강요할 수 없음.
- 국내환경정책 및 기준에 근거하여 무역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 또한 이 무역조치는 국내 환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

피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의 입증의무 및 동조치의 투명성 확보의무는 시행국이 져야 함.

- 자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타국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일방적 무역규제는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의 환경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지되어야 함.

2. 대내적 대응방안

(1)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 국제환경협약에의 非加入에 따른 무역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체결된 국제협약에 대한 加入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법령제정,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제고 등 내적안건을 갖추고 가입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구환경대책위원회와 산하 실무대책회의 및 기획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 및 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적게 배출하기 위해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LNG 등과 같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청정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투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자연조건이나 기술수준을 감안해 볼 때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을 더 중점 추진해야 할 것임.

- 즉,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이용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에너지이용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밀기기, 유전공학 관련 산업 등 에너지투입량이 적으면서도 부가가치창출액이 큰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에너지저소비업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3)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겠으며, 청정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환경오염방지기술 등 환경관련 핵심 및 기본기술개발을 21세기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해 세계·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대체물질의 시장확보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음.

- 또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을 전문화시키는 한편 대형화를 위해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설비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4)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 국내산업의 잠재력과 국제환경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내환경기준을 재검토한 후 환경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비하도록 해야 하겠음.

-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공해방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현행의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출규제와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농도규제중심의 배출규제방식을 총량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규모의 영세성, 만능적 자금압박 등으로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중소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폐기물 재활용도 제고 및 재생산업 육성

- 유해폐기물교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납스크랩, 古紙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생용 원자재의 수입에로 발생이 우려되는 바, 폐기물 회수·수거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제조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활용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국내발생 폐기물의 재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폐기물 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체도를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6) 생물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 생물다양성협약과 산림의정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내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희귀종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생태계보전지역의 추가지정 등 실효성있는 보전대책을 수립 퇴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등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료부담 증대에 대비하여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체제도 구축해야 하겠음. ●